



서대문구

수신자 내부결재
(경유)

제목 『120교통불편신고』 개인택시 행정처분(6월)

1.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6조(택시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등) 위반으로 「120교통불편신고」에 접수된 민원에 대하여 운수종사자에게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의거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등의 기회를 부여하고,

2. 「서대문구 교통민원신고 심의위원회(2016.6.21.)」의 심의결과를 반영하여, 여객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9조(과태료의 부과기준)에 의거 아래와 같이 행정처분 하고자 합니다.

□ 행정처분 내역

계(건)	운 수 과 징 금		운 전 자 과 태 료		주 의 건	불문 건	처리불가 건	재심 건
	건	금액(천원)	건	금액(천원)				
15	1	200	1	100	7	6	0	0

- 붙임 1) 심의조서 1부.
 2) 심의결과서 1부.
 3) 회의록(비공개) 1부. 끝.

주무관 **홍효선** 운수지도팀장 **代김창열** 교통관리과장 **문석만** 안전건설교통국장 **06/22 김중두**

협조자

시행 교통관리과-18161 () 접수 ()

우 03718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 248 / http://www.sdm.go.kr
 전화 02-330-1876 /전송 02-330-1638 / hong1026@sdm.go.kr / 부분공개